

「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」 고시 일부개정

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
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
-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(2020. 7.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)

나. 시행일 : 2021. 8. 1

다. 수급조절 기간 : 2021. 8. 1~2023.12.31.

라. 수급조절방법

-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:
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(금지)
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